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 22. 진선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1.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3.)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진선미의원)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면서 기금의 사용처

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선영)

개정안에 따라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제6조(사업)에 규정될 경우, 재단이 수행하는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 사업이 「사학재단법」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근거에 따라 재단에서 대학생의 주거 편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생의 주거복지 증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사학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는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 사업도 포함하기 위해서는 제6조(사업)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규정된 제6조제1항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을 제2항에 신설하고,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을 제2항에 신설하고,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이 포함된 제6조제1항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을 제2항에 신설하면서,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의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제6조(사업) ① ----- -----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u>4.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u>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u><신설></u>	제6조(사업) ① ----- ----- ----- ----- --. 1. ~ 3의3.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4. ~ 6. (개정안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u>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u> 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①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6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u>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u> <u>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u> <u>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